

외국의 로스쿨 현황

● ● ● 박 상 기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국내 로스쿨을 도입하기에 앞서, 국외의 로스쿨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곧 그 나라의 법학교육제도를 살펴보는 일이므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의 로스쿨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로스쿨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I. 법학교육과 로스쿨

각국의 법학교육방식은 그 나라의 법률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외국의 로스쿨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곧 그 나라의 법학교육제도를 살펴보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주지하다시피 세계의 법체계는 크게 대륙법체계와 영미법체계로 나눌 수 있다. 내용적으로는 이슬람법체계가 독자적 특색이 있고, 일부 사회주의법체계도 존재하지만 법이 존재하는 형식을 중심으로 본다면 독일과 프랑스로 대표되는 대륙법체계와 영국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영미법체계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 일본을 통하여 독일의 법체계가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대륙법체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법제가 세계화의 경향 속에서 광범위하게 도입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것이 법체계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대륙법체계를 중심으로 한 법률제도 속에 미국의 법제도가 내용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법학교육상 우리나라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미국과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법학교육 및 법률가양성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편의상 '로스쿨'이라고 한다)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II. 미국의 로스쿨

로스쿨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낸 미국의 법학교육과 법률가양성시스템은 국가가 디자인한 교육 제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제도라는 데에 특징이 있다. 즉 그 시발이 유럽의 대학처럼 제도화된 교육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개업 변호사 사무실의 서기에게 가르치는 일종의 도제방식

(apprenticeship system)으로 시작되어 진화한 것이다.¹⁾ 현재의 로스쿨제도는 하버드 로스쿨이 채택한 교육내용을 모델로 하여 점차 체계적이고 동질성이 있는 미국 로스쿨이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6월 현재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가 인정하는 195개의 미국 로스쿨은 알래스카 주를 제외한 전국 49개 주에 소재하고 있다.²⁾

미국 로스쿨의 기본골격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로스쿨에 입학시켜 변호사를 양성하는 데에 있다. 즉 학부에는 법학부가 없으며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로스쿨 적성시험(Law School Admission Test, LSAT)과 서류전형 등을 통하여 입학생을 선발한다. 이 학생들이 3년의 법학교육을 받은 다음 주별로 실시되는 변호사 시험(Bar Examination)에 합격하면 비로소 그 주의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LSAT는 5지 선다형과 논문 1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학시험이 아니라 주로 응시자의 논리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주관기관은 비영리법인인 LSAC(Law School Admission Council, Inc.)이며 1년에 4회 실시된다.

그리고 실무수습은 로스쿨 2년차에 하게 된다.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법원, 변호사 사무소, 각종 비영리단체 등에 나가서 하게 된다. 로스쿨을 졸업하면 J.D 학위를 수여받게 되며 병설적으로 외국 대학의 법학부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년제 석사과정(LL.M.)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J.S.D.가 있는데 모든 로스쿨에 다 개설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소수 로스쿨에 이러한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이 박사과정은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외국인을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로스쿨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우선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공부는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은 합격률에서 알 수 있듯이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로스쿨을 졸업하면 변호사시험에 자동적으로 합격하는 것은 아니다. 명문 로스쿨의 경우 교과과정이 연방법 위주로 되어 있고 강의내용이나 시험이 변호사시험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로스쿨 졸업 이후 변호사시험을 보기 위하여 약 1개월 20일 정도 사설학원(대표적으로는 Bar/Bri)에서 시험용 교재로 강의를 듣고 모의시험을 본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주별로 차이가 나지만 70~80% 정도이다.³⁾ 2006년 현재 미국의 변호사 수는 1백 6만 명을 넘어섰다.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법률가들의 진로는 다양하다. 출신 학교의 명성과 학교성적 등이 좋은 직장-유명 로펌-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다. 그리고 졸업생들의 연봉액수는 로스쿨의 명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이들이 로펌이나 정부기관, 기업 등에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이후에 판사나 검사로서 임명되는 것이 미국의 사법구조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법률가들에 대한 사후 교육을 중시하여 지속적 법학교육(Continuing Legal Education, CLE)을 시킨다는 점이다.

미국의 로스쿨을 설명할 때 흔히 '소크라테스식 교육방법(Socratic method)'을 특징으로 든다. 심지어 미국 로스쿨은 이러한 교육방법에 의해야만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

1) 예일 로스쿨을 중심으로 한 미국 로스쿨의 발전모습에 대해서는 Anthony T. Kronman, History of the Yale law School, 2004, Yale University Press 참조.

2) 추가적으로 미군 장교를 위하여 인가받은 특수한 로스쿨이 있다-U.S. Army Judge Advocate General's School-
<http://www.abanet.org/legaled/approvedlawschools/approved.html>

3) http://www.ncbex.org/fileadmin/mediafiles/downloads/Bar_Admissions/2006stats.pdf

든 교육방법은 효과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미국 로스쿨의 경우에는 판례법 중심의 불문법 국가인 특성에서 비롯된 바도 크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로스쿨이 도입될 경우에 구체적인 교육방법은 개별 교수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소크라테스식 방법이 로스쿨 교육에 필수적이거나 모든 과정에서 효과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미국 로스쿨의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미국 법제도의 특징으로 인하여 우리보다 상당히 세분화되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예일 로스쿨의 경우 가을학기 과목은 다음과 같다: 헌법(Constitutional Law) I. 4학점, 계약법(Contracts) I. 4학점, 소송법(Procedure) I. 4학점, 불법행위법(Torts) I. 4학점. 가을학기 고급코스에서는 행정법, 영미법사, 독점금지법, 사형제도, 비교헌법, 비교법, 기업지배, 현대 아프리카의 법적 쟁점, 부패 및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형사소송법, 고용법, 증거법, 가족법, 연방소득세법, 법률가를 위한 회계학, 국제투자법, 법철학 입문, EU법, 입법학, 천연자원법, 양형론 등등이다. 봄학기에는 행정법, 고급 송무연습, 미국법사, 파산법, 경영조직, 자본주의, 국제사법, 헌법소송세미나, 기업세무, 노동법의 신 쟁점, 연방형사소송법, 보통법(Common Law)의 역사, 연방최고재판소 변론 등등이다.⁴⁾ 하버드 로스쿨에서는 행정법, 동물법, 형법, 독점금지법, 파산법, 민사소송법, 상법, 비교헌법과 정치, 비교법, 국제사법, 헌법, 계약법, 기업법, 고용법, 환경법, 증거법, 가족법, 음식 및 의약법, 이민법, 보건관계법, 국제법, 이슬람가족법, 노동법, 법과 경제, 로마법, 법과 문학, 협상법, 재산법, 심리학과 법, 세법, 불법행위법, 세법 등등이다.⁵⁾ 이처럼 미국 로스쿨에서 제공되는 과목은 위에 열거한 것 이외에도 다양하고 대학별로 교육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전국적인 명문대학일수록 연방법 중심의 강의에 중점을 두며 사실상 변호사 시험합격을 위한 교육은 시키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독일의 법학교육

독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은 우리의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김나지움(Gymnasium,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1년이 긴 13년의 과정임)을 졸업한 학생들이 졸업자격시험(Abitur)에 합격한 다음 대학(Universität)에 입학하여 바로 법학을 공부하므로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식-또는 장래 우리의- 로스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독일 법학교육의 전체적인 개요는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보통 8학기 이상⁶⁾ 공부를 한 다음 각 주별로 규정된 국가시험(Staatsexamen) 요강에서 요구하는 개별 과목에 대한 Schein(연습시험 합격증서 또는 세미나 발표증서)을 제출하여 제1차 시험응시를 지원하게 된다.⁷⁾ 1차 시험(우리의 사법시험처럼 객관식

4) <http://www.yale.edu/bulletin/html/law/course.html>

5) <http://www.law.harvard.edu/academics/courses/2007-08/>

6) 8학기 이상 수학학생이 33.6%, 9학기는 16.5%, 10학기는 17.6%, 11학기는 9.9%, 12학기 6.8% 등이다. <http://www.bmj.bund.de/files/-/1369/Ausbildungsstatistik2005.pdf>

7) 근래 독일법과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법학적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간시험(Zwischenprüfung)에 합격하여야 법학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베를린 훔볼트대학의 경우 공법(I, II, III), 민법(I, II, III), 형법(I, II, III) 세 과목에 대한 9개 가운데 8개의 연습시험합격 및 3주간의 기간 동안 작성하여야 하는 3개의 과제물 가운데 각각 다른 2개 과목의 과제(Hausarbeit)를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시험이 아니라 2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형식의 주로 사례문제가 출제된다)에 합격한 후에는 2년 간의 실무연수(Praxis)를 거친 다음 다시 제2차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완전한 법률가자격(Volljurist)을 취득하게 된다. 즉, 판사나 검사가 되거나 변호사로서 활동이 가능하다. 그 밖에도 행정부나 외교관으로 진출하기도 하며, 기업에 취업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가능하다.

독일에서 법학은 의학과 함께 인기 있는 전공 가운데 하나여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전국적인 인원제한을 하기도 한다. 전국적으로 약 40여 개의 법과대학에서 약 2만 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으며, 2005년도 1차 시험 응시자는 12,353명이었다. 이 가운데 합격자는 9,015명(73%), 불합격자는 3,338명(27%)이었다. 그리고 실무수습을 마친 2005년도 2차 시험 응시자는 11,01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9,400명(85.3%)이 합격하고 14.7%에 해당하는 1,616명이 불합격하였다. 이러한 합격률은 매년 비슷한 추세이다(2004년도 1차 합격자수는 9,655명, 2차 합격자수는 9,639명이었으며, 1996년도에는 1차 합격자가 12,573명, 2차 합격자가 10,689명으로 가장 많았다).

독일 법과대학에서 제공되고 있는 강의를 살펴보면 주별로 시행되는 국가시험 필수과목 및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개설되어 있다. 베를린 훔볼트(Humboldt)대학의 경우에는 독일 어느 대학과 마찬가지로 민법과 형법, 공법 및 법철학, 법사회학, 법사학, 상법, 회사법, 노동법, 상속법, 가족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유럽법, 건축법, 일반행정법, 헌법사, 신문방법론, 외국어 등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수사학 및 의사소통, 경영학 및 대중을 상대로 말하기에 대한 강의가 개설되어 있는 점이다.⁸⁾ 괴팅겐(Göttingen)대학의 경우 기본과목으로 독일법사, 민법(I·II·III), 헌법과 행정법을 포함하는 공법(I·II·III), 형법 I·II, 물권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경제법, 노동법, 유럽사법 및 소송법, 국제민사소송법, 국제사법, 국제법, 유럽법, 국제인권보호, 미국사법 입문, 의료법, 미디어법, 언론법, 청소년언론보호법, 정보보호법, 경제행정법, 국제 및 유럽 공법, 범죄학, 행정법, 국제형법, 개별 세미나(예: 경제공법 세미나, 에너지법 세미나 등) 및 연습시간 등이 제공되고 있다.⁹⁾ 뮌헨(München)대학의 경우에는 9개의 중점 영역으로 나누어 세부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즉 법학기초, 형사사법·형사변론·범죄예방, 경쟁법·지적재산권법·미디어법, 기업법·회사법·자본시장법·파산법, 노동법·사회법, 내국·국제·유럽 세법, 국제·유럽·외국 사법 및 소송법, 독일 및 유럽 경제법, 유럽·독일 공법영역이다.¹⁰⁾

IV. 일본의 로스쿨

지난 2004년 개교한 일본의 로스쿨-정확한 명칭은 대학원 소속의 '법무연구과(法務研究科)'이다-은 현재도 그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우리와 달리 일본 로스쿨은 법학부를 그대로 존치시킨 채 로스쿨을 도입하였으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기수생(既修生)으로 선발-와세다대학은 예외-하여 2년 교육 후 졸업을 시키며,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미수생(未修生)

8) [http://www.rewi.hu-berlin.de/index.php?path= ./studium/angebot](http://www.rewi.hu-berlin.de/index.php?path=./studium/angebot)

9) <http://www.uni-goettingen.de/de/sh/31528.html>

10) http://www.uni-muenchen.de/einrichtungen/fakultaeten/03_jura/index.html

은 3년 교육 후 졸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¹¹⁾ 그래서 2006년에 이미 제1회 졸업생이 배출되어 신사법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배출한 바 있다. 제1회 신사법시험에서 응시자 총수는 2,091명, 합격자 총수는 1,009명이었다(합격률 48.3%). 합격자 수가 가장 많은 대학은 주오(中央)대학으로 131명(응시자 239명, 합격률 54.8%)¹²⁾, 그 다음은 도쿄(東京)대학 120명(응시자 170명, 합격률 70.8%), 게이오(慶應)대학 104명(응시자 164명, 합격률, 63.4%), 교토(京都)대학 87명(응시자 129명, 합격률 67.4%)이었다. 합격자 수 5위의 히토츠바시(一橋)대학은 53명이 응시하여 44명이 합격, 합격률에서는 83%로 전국 1위이다. 그러나 4개 로스쿨은 합격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였다.¹³⁾ 2007년에는 사실상 정식 졸업생인 미수생이 졸업을 하고 신사법시험을 치르도록 예정되어 있으므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 결과가 매우 주목되고 있다.

일본 로스쿨의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상당히 심화된 과정을 개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통 법률 기본과목군은 공법계, 민사계, 형사계로 분류하여 개설하고 있으며 실무기초과목군과 선단과목군 등으로 분류하여 개설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도쿄대학은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 재정법, 지방자치법, 정보법, 입법학, 소비자법, 환경법, 국제민사소송법, 법조윤리, 노동법, 조세법, 경제법, 도산민사집행법, 지적재산법, 신탁법, 사회보장법, 재판외분쟁처리법, 법과 경제학, 현대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 금융법, 형사정책, 소년비행과 법, 경제형법, 국제조세법, 국제경제법, 국제인권법 등을 개설하고 있다.¹⁴⁾ 게이오대학은 1년차에는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행정법, 법조윤리, 2년차에는 기업법무, 금융법무, 섭외법무, 지적재산법무, 3년차에는 지방자치법, 조세법, 에너지법, 가족법, 지적재산법, 도산법, 소비자법, 신탁법, 보험법, 기업금융법, 기업회계법, 형사정책, 피해자학, 경제형법, 피해자학, 국제사법, 국제환경법, 국제조세법, 국제형사법, 국제경제법, 국제인권법, 미국법, WTO법, 환경법, 정보법, 사이버법 등이다.¹⁵⁾ 주오대학은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영미법, 보험법, 기업금융과 법, 경제법, 독점금지수속법, 도산처리법, 노동법, 지적재산법, 조세법, 국제조세법, 조세정책론, 국제조세법, 국제인권법, 국제경제법, 국제교섭론, 국제경제법, 국제사법, 가사분쟁과 법, 재판외분쟁해결제도, 증권취인법, 기업취인과 법, 사회보험법, 소비자법, 환경법, 의료와 법, 현대부동산법, 경제형법, 헌법소송론, 교정과 법 등이 개설되어 있다.¹⁶⁾

일본형 로스쿨의 특징은 미국과 달리 학부 법학교육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점과 순수한 의미의 변호사자격시험을 전제로 하지 않고 여전히 법조인 선발시험과 같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일본 로스쿨 졸업생의 신사법시험 합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점점 하향될 것

11) 일본대학들은 미수자보다는 기수자를 선호한다. 교육을 시키기가 용이하고 합격률도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게이오대학의 경우 첫 입학생 가운데 70%가 기수자였으며, 문부과학성의 지침에 따라 30%만을 미수자로 선발하였다.

12) 주오대학은 전후 일본에서 사법시험합격자를 많이 배출하기로 유명한 대학이다. 1949년부터 2003년까지 출신대학별 사법시험 합격자 총수를 살펴보면 도쿄대학은 5,877명, 주오대학 5,156명, 와세다대학 3,591명, 교토대학 2,568명, 게이오대학 1,658명 순이다.

13) 東京産業大, 神戸學院大, 東海大, 姫路獨協大이다.

14) <http://www.j.u-tokyo.ac.jp/sl-2/gaiyou/GAIYOU.htm>

15) <http://www.ls.keio.ac.jp/education/curriculum/index.shtml>

16) http://www2.chuo-u.ac.jp/law-school/educontents/clist_01.html

이어서 합격률을 높이지 않는 한 로스쿨의 교육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시험준비에 매달릴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로스쿨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을 달성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V. 글을 맺으며

법학교육과 법률가양성은 세계화와 맞물려 있다. 즉 세계화의 진행은 법률체계가 더 이상 국내적일 수 없으며 시장통합에 따른 세계화·통합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맞추어 법학교육제도 역시 현행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어 새로운 교육방식과 교육체계를 도입하려는 시도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로스쿨을 도입하는 목적은 기존 법학교육과 법률시장을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세계 법률시장은 서비스시장개방을 통해 점차 하나로 통합되면서 시장규모도 커지고 있다. 영국이나 미국의 세계적 규모의 로펌은 세계 주요국에 지점을 설치·운영하면서 각국의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고 있으며, 이들 로펌이 다루는 문제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비해 그 동안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이나 법률가양성시스템은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률서비스시장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이고, 교육과정도 사법시험과목과 연계되지 않는 한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없었다. 오로지 사법시험과목에 대한 강의 및 학습이 주종을 이루었기 때문에 법학교육의 내용도 전문화될 수 없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과 사회발전은 이러한 현상(現狀)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로스쿨 도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확대 및 법률가로의 진입을 포함하는 전체 법률시장 진입이 더 이상 제한적이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로스쿨에서의 교육이 시험준비용이 아니라 글로벌화한 세계 법률서비스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법률가양성이 가능한 교육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로스쿨은 교육체계 자체가 자동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법률가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다. 로스쿨은 개방적인 법률가 배출제도를 전제로 한 법학교육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 한 로스쿨 역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법시험은 변호사자격시험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그것도 무늬만 자격시험이 아닌 정원이 사전에 결정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자격시험이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로스쿨이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법률가양성만이 아니라 우리 법문화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우리 사회의 법제도에 대한 학문적 분석을 통해 법치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중심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로스쿨제도 도입이 국가발전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으며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박상기]

박상기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학교 법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연세대학교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는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정책』 등 다수가 있다.